

제28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회의 2022. 3. 22.(화)

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#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

## 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일자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선자가 시 조직·예산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새로운 시정 정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직을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(안 제3조)

나. 인수위원회 설치 및 업무 내용 (안 제5조 및 제6조)

다. 인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등 지원(안 제7조 ~ 제15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기획예산과

라. 입법예고 : 2022. 3. 11. ~ 3. 17.(7일간) / 의견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‘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’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포함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.

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과 예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「지방자치법」 위임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위원회의 업무 및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간사와 대변인,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필요 예산의 확보 및 위원회의 자료·정보 등을 협조하도록 명시하였으며, 안 제19조에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운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인수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법 제도권 내에 둬으로써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,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자치단체장직 업무 인수체계 기반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,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당선인의 빠른 시정 파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「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에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운영비(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, 차량지원 등)와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86,500천원의 활동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됨

- 참석수당: 15명 × 100,000원 × 50회 = 75,000,000원

- 여비: 15명 × 20,000원 × 5회 = 1,500,000원

- 운영비: 10,000,000원 × 1식 = 10,000,000원

※위원회 참석수당 근거: 총무과-17303(2021. 5. 11.)호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### 4. 작성자

- 행정기획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

**☑ 「지방자치법」**

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

①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(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당선인"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

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인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.

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·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

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시·도: 20명 이내
2. 시·군 및 자치구: 15명 이내

⑥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,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⑦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

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